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3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2023 - 143

나. 발 의 자: 박성호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3년 11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3. 11. 23.)

2. 제안이유

우리 의회의 정례회 일정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의회 운영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부터 의회 일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례회 일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단서)

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6월 8일에서 5월 25일로 변경함(안 제4조 제1호)

다.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11월 15일에서 11월 22일로 변경함(안 제4조 제2호)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53조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의회의 의사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1차,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4조 단서: 정례회 일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함
- 안 제4조 제1호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6월 8일에서 5월 25일로 변경함
- 안 제4조 제2호 :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11월 15일에서 11월 22일로 변경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정례회 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정례회 회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올해 우리 의회 제1차 정례회의 경우 6월 8일에 시작하여 7월 12일에 종료하였는데 2024년 회기가 이와 유사하게 운영될 경우 새로운 의장단의 구성과 상임위원회

의 구성이 회기 중에 이루어지게 되어 의회의 의사 운영이 원활히 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보았을 때

○그리고 제2차 정례회의 경우 현행 11월 15일의 개회일은 서울특별시 예산 일정과 비슷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시의 보조금 내시 반영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예산안이 확정되어 수정예산이나 추경 시 보조금의 내시 반영 사항이 많기 때문에 예산안의 정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취지, 목적, 절차 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자치구의 제2차 정례회 시작일은 우리 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20일 이후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서울 25개 자치구 정례회 개최 시점

자치구명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행감 실시 시기
종로구	5. 20.	11. 20.	1차 정례회
중구	6. 12.	11. 21.	1차 or 2차 정례회
용산구	6. 1.	11. 20.	2차 정례회
성동구	6. 5.	11. 25.	1차 정례회
광진구	5월 네번째 화요일	11. 16.	2차 정례회
동대문구	5. 26.	11. 27.	1차 정례회
중랑구	5. 25.	11. 28.	1차 정례회
성북구	6. 2.	11. 20.	1차 정례회
강북구	6. 1.	11. 17.	2차 정례회
도봉구	6. 8.	11. 17.	2차 정례회
노원구	6. 9.	11. 18.	2차 정례회
은평구	5월 네번째 화요일	11월 네번째 화요일	1차 정례회
서대문구	6월 첫번째 목요일	11. 11.	2차 정례회
마포구	6. 1.	11. 25.	1차 정례회
양천구	6. 13.	11. 25.	1차 정례회
강서구	6. 8.	11. 15.	1차 정례회
구로구	5월 네번째 화요일	11. 27.	1차 정례회
금천구	6. 8.	11. 23.	1차 정례회
영등포구	6. 12.	11. 20.	2차 정례회
동작구	6. 10.	11. 13.	2차 정례회
관악구	6. 8.	11. 20.	2차 정례회
서초구	6. 1.	11. 15.	2차 정례회
강남구	6. 10.	11. 15.	2차 정례회
송파구	6월 두번째 수요일	11. 19.	2차 정례회
강동구	6월 첫번째 수요일	11월 세번째 수요일	2차 정례회

□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